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6

제출년월일 : 2002.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나.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정보화담당관실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정보화담당관 이 종 길
	담당·팀장 직위·성명	정보화기획담당 이 동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재 홍 (행정 28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부]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産業의 基盤을 造成하며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를 實現함으로써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1.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 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文字·音聲·音響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
2. "情報化"라 함은 情報를 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社會 각 분야의 活動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이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 및 그 活用과 이에 관련되는 機器·技術·役務 기타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活動과 手段을 말한다.
4. "情報保護"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중에 情報의 훼손·變造·流出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技術的 手段(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이라 함은 實時間으로 動映像情報를 주고 받을 수 있는 高速·大容量의 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情報通信網"이라 한다)과 이에 接續되어 이용되는 각종 情報通信機器·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6. "情報資源"이라 함은 情報 및 이와 관련되는 設備·技術·人力 및 資金등 情報化에 필요한 資源으로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의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의 촉진과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및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이하 "情報化促進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정보통신부]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의 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6.30>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를 관장하는 1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6.30>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⑤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산업·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처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⑥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1999.02.24 조례제0829호]

개정 2000.03.10 조례제09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
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 제1조의 규정 목적에 따른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추진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의 지역정보화 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지역정보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시·군과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시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시 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업무를 수행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한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4조(설치) ①시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장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6조(시설장비) ①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련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17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②시 소속공무원은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

조치는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보화 교육의 효과와 지역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육비용의

일부를 교육수혜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0.03.10>

제20조(교육시설·장비확보)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는 LAN 등 관련 시설·장비

와 우수교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76

제안년월일 : 2002. 10. 18.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수정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9조 제4항 중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수정함.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4항 중 "20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구성) ①~③(생략) ④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③(원안과 같음) ④..... ....10인 이내..... ....